



위촉자(갑): (주)아이피에스

수축자(을) : 아미종합물류관세사법인

제 1 조 (목적)

(주)아이피에스 (이하"갑") 은 과세전적부점차 (이하"심사청구") 업무 위촉과 관련하여 아미종합물류관세사법인 (이하"을")음 용역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2 조 (위촉업무)

"을"은 "갑"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상대 관청인 수원세관에 제출된 수입관련자료등을 입수 하여 관세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 및 그 입중 자료를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작성하여 "갑"을 경유하여 수원세관장에게 접수한다.

제 3 조 (신의, 성실)

"을"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수원세판 및 상급관청인 관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승 소할 수 있도록 자체 위원회를 구성(관세사3명이상)하여 주변 과세관청의 유력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출장, 회의, 자료제출, 심사위원 접촉에 관한 일련의 계획과 실 천율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
제 4 조 (업무협조와 자료제공)

"갑"은 "올"이 심사청구를 대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불품용도설명서, 수입신고필종, 카다로그, 엔지니어설명, 기타 심사청구에 유리한 자료 또는 반도체협회정보 및 기타 심사 청구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

제 5 조 (업무수행기간)

"갑"은 "을"이 심사청구를 대행하는데 수원세판으로부터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"갑"이 받은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용역수행 기간은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
제 6 조 (용역에 대한 보수)

십사청구 중소 할 경우 "갑"은 "을"에게 중소보수액으로 추짐예정금액(약2억원)에 대하여 100분의 3을 중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올에게 지급한다. 단, 패소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출장비, 교통비등 부대 경비만을 "갑"과 "을"이상호 혐의하여 올에게 지급한다.

제 7 조 (비밀보장)

"을"은 본 용역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"갑"의 비밀을 타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8 조 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

"갑" 또는 "음"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9 조 (상호합의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온 상호합의에 의한다.

제 10 조 (기타)

이 계약의 성립을 입중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"감"과 "올"이 각기 기명날인 하여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.

2001 . 10 . 26 .

"갑" (주)아이피에스 대 표 이사 이

"요" 아미종합물류관세사법의 대표관세사 이 광 수